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인터넷시스템 개발·유지보수 및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3조의2제2항 중 "운영 및 인터넷 민원처리 실태를"을 "운영을"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"구민과"를 "이용자와"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"범위 내에서 보상의 제공 또는 시상을 할 수 있다."을 "범위에서 시상금(유가증권 포함) 또는 시상품 등을 별표2와 같이 제공할 수 있다."로 한다.

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,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1.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
- 2. 통계작성,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
- 3.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

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[별표2]

이용자참여 행사의 운영 지원 기준 (제16조 관련)

대 상	방 법	내 용
홈페이지 행사 참가자	참가/당첨	50,000원 이내의 시상금(유가증권 포함) 또는 시상품 등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≪신・구조문대비표≫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인터넷시스템 구축・운영) ①	제3조(인터넷시스템 구축・운영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④ 제3항에 따라 인터넷시스템
	개발・유지보수 및 운영을 외부
	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
	는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
	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
	<u> 따른다.</u>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3조의2(사전협의 및 점검) ① (생	제3조의2(사전협의 및 점검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총괄부서의 장은 구청 및 구 소	2
속행정기관에 대하여 홈페이지 <u>운</u>	<u>운</u>
영 및 인터넷 민원처리 실태를 점	<u> 영을</u>
검할 수 있다.	
제14조(소통창구 운영) ① 구청장은	제14조(소통창구 운영) ①
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	
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	
견 교환을 하기 위해 <u>구민과</u> 소통	<u>이용자와</u>
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	
다.	- 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이용자참여 행사의 운영) ①	제16조(이용자참여 행사의 운영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② 제1항에 의한 성적 우수자 또	②
는 참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	<u>범위</u>
위 내에서 보상의 제공 또는 시상	에서 시상금(유가증권 포함) 또
<u>을 할 수 있다.</u>	는 시상품 등을 별표2와 같이 제
	<u>공할 수 있다.</u>
제20조(개인정보 보호) ① (생 략)	제20조(개인정보 보호) ① (현행과
	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서비스 제
	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
	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
	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, 다
	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
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	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	1.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
	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
	<u>있는 경우</u>
	2. 통계작성, 학술연구 또는 시장
	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
	써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
	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
	<u>경우</u>
	3.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
	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
<u>②</u> ~ <u>④</u> (생 략)	<u>③</u> ~ <u>⑤</u> (현행 제2항부터 제4항
	까지와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[별표 2] 이용자참여 행사의 운영 지원 기준
	대상 방법 내용 홈페이지 행사 참가자 참가/ 당철 50,000원 이내의 시상금(유가증권 포함) 또는 시상품 등